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565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9.

발 의 자: 송옥주 · 이용빈 · 박성준

이수진비・이성만・양정숙

윤미향 • 전혜숙 • 박상혁

정춘숙 · 김승원 · 송재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 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유지나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저수지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산책로 및 시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 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「농어촌정비법」 개정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23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0361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3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